kt 노사상생센터
궁금하거나, 불편할 땐 노사상생센터로!

2020년 4월 3주차
251호

가족돌봄휴가제도 안내

kt·kt노동조합

"연차휴가와 별도로 사용할 수 있는 가족돌봄휴가제도가 있다고 들었습니다. 어떤 제도인가요?"

✔ 가족돌봄휴가는 가족(부모, 배우자, 자녀, 배우자의 부모, 조부모, 손자녀)의 질병·사고·노령·자녀양육의 사유로 사용할 수 있는 무급휴가제도입니다.

가족돌봄휴가 관련 FAQ

Q1. 가족돌봄휴가는 연간 며칠까지 사용할 수 있나요?

☞ **가족돌봄휴가는 연간 최대 10일까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.** (1일단위 사용 가능)

※ 연간 사용할 수 있는 가족돌봄휴직 120일 중 10일을 돌봄휴가로 사용 가능하도록 신설 ('20.1.1)

Q2. 가족돌봄휴가는 어떻게 사용하면 되나요?

☞ **복무권자의 승인하에 사용하시면 되며, 필요 시 복무권자가 요청할 경우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.** (가족돌봄 이외의 사유로 사용 불가)

Q3. 코로나19로 정부에서 한시적으로 지원하는 가족돌봄비용 지원금 신청을 위해 가족돌봄휴가 확인서 제출이 필요한데, 발급방법을 알 수 있을까요?

☞ **'Kate > ERP > HR > 개인업무 > 급여 > 증명서 발급 > 육아급여증명서 발급 '에서 가족돌봄휴가 확인서를 선택하여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.**

[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 개요]

▶ **지원금 : 1일 5만원(최대 10일까지) 지원** ※고용노동부 홈페이지(www.moel.go.kr)에서 신청 (소급신청 가능)

▶ **대상 : 1.20일부터 비상상황 종료 시까지 다음 사유로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한 근로자**

- 부모, 배우자, 자녀, 배우자의 부모, 조부모, 손자녀(조손가정에 한함)가 코로나19 확진자, 의사환자, 조사대상 유증상자로 긴급하게 돌봄이 필요한 경우
-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 中
  ① 소속된 어린이집·유치원·학교가 코로나19 관련하여 개학 연기 및 휴원·휴교를 시행한 경우
  ② 무증상 자율격리자로 등(원)교 중지 조치를 받은 경우
  ③ 접촉자로 분류되어 자가격리 대상인 경우